



建築分野・国家技術資格法 改正内容 案内

이창생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변천하는 産業社會의 技術需要를 충족할 수 있는 技術資格者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정부는 一部 技術資格 種目を 新設 또는 廢止하고 檢定方法을 개선하였으며 檢定試驗의 應試資格 要件을 調整하는 등 國家技術資格法令을 改正 公布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建築分野의 技術資格 檢定 應試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改正事項을 중심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1. 技術系 檢定内容

(1) 檢定の 種類 (施行令 제2조: 별표1)

기 술 사	기사1급	기사2급
○ 건축기술사(건축구조)	○ 건축	○ 건축
○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 건축기술사(건축시공)		

- 註1. 종전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기계 또는 전기) 종목을 건축기계 설비와 건축전기 설비로 구분 시행하기로 함.
 2.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技術資格中 廢止된 종목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技術資格을 계속 보유하는 것임.
 ●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기계) →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 건축기술사(건축설비: 전기)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2) 等級別 應試資格(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 3)

등 급	응 시 자 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이하 "동일기술분야"라 한다)의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분야(이하 "다른 기술분야"라 한다)의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동일기술분야의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다른 기술분야의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4년제대학 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등으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1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1급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동일기술분야의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기술분야의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그 이수 예정자 8. 동일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2 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다른 기술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동일기술분야의 기능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 2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그 이수예정자 5. 동일기술분야의 기능사 2급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동일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7. 동일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외국에서 동일 종목·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註: 1. 기술사 시험에 있어 종전에는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또는 9년의 실무종사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도 20년 이상의 실무종사경력이 있는자도 바로 기술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음.
2. 기사 1급 및 기사 2급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응시하도록 하였음.
● 종전 안전관리 분야의 소방설비기사의 건축분야 종목이 폐지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하여 各類別 구분없이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을 검정시행토록 개정 하였음.

(3) 檢定の 方法

① 檢定の 基準(시행령 제14조)

- 技術士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평가·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 기사 1급은 건축기술분야에 관한 공학기초 지식과 그 적용능력의 유무 검정
- 기사 2급은 건축기술분야에 관한 기술기초 지식과 그 적용능력의 유무 검정

② 檢定 方法(시행령 제15조 제 1항)

등급 구분	검정방법	출제형태	출제문제수	시험시간
기사 1급	필기시험	주관식 논문형		기초: 160분

	○경력심사 ○면접시험	— —	— —	전문: 240분
기사 1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4 지 택 1 형 1급: 필답작업형 2급: 실기작업	과목당 20문제 (건축시공실무) (시공도면작성)	과목당 30분 2~3시간정도 4~5시간

註: 1. 檢定은 필기시험·실기시험·경력심사 및 면접시험 순으로 하며 앞 순위시험(경력심사 포함)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시행령 제15조 제 3항).
2. 檢定에 있어 기술사의 경우 면접시험,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의 경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되는 2회의 검정에 한하여 이미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시행령 제25조).

③ 시험과목(시행규칙 제 5 조 : 별표 4)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축기술사 (건축구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기타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축기계설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축전기설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기술사 (건축시공)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시공·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건축기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실기시험	건축시공
건축기사 2급	필기시험	1. 건축계획각론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실기시험	건축제도

註: 1. 기술사의 시험과목은 종전과 같이 기초 부분과 전문부분으로 구분하여 주관식 논문형으로 검정한다.
2. 기사 1급의 실기시험은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필답형 주관식 출제형식을 취하여 건축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정한다.
3. 기사 2급의 실기시험은 주로 건축시공도면(Shop Drawing)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검정한다.

2. 技能系 檢定内容

(1) 等級別 應試資格(시행령 제11조제 2호 : 별표 5)

등급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이하 “동일직무분야”라 한다)의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기능대학의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실무에 종사한 자

2.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한다)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1급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직무분야에서 3년(동일직무분야를 전공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동일직무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분야(이하 “다른 직무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5. 기술자의 종목별로 기능사 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그 이수예정자 6. 고등학교졸업자 등으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2급	제한없음
기능사보	제한없음

② 檢定方法(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급	구분	검정방법	출제형태	출제문제수	시험시간
기능장		○필기시험	(미제정)	(미제정)	(미제정)
		○경력심사	—	—	—
		○면접시험	—	—	—
기능사 1급		○필기시험	4지택1형	전과목60문제	전과목60분
기능사 2급		○실기시험	실기작업		1급 6시간 2급 5시간
기능사보		○실기시험	실기작업		3시간

註: 기능장의 점검은 경력심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을 추가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음.

③ 시험과목(시행규칙 제5조: 별표 4의 2)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축제도기능장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제도·계획·재료·시공·구조·건축관계법규·설비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제도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법규 5. 건축계획
	실기시험	건축제도
건축제도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법규 5. 건축계획
	실기시험	건축제도
건축재료시험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건축재료 2. 건축시공 3. 건축재료시험 4. 구조역학
	실기시험	건축자재 및 부품시험
건축재료시험기능사보	실기시험	건축자재 및 부품시험
건축시공기능장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구조·시공·재료·제도·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적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조적시공
	실기시험	조적작업
조적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조적조 3. 건축제도 4. 조적시공
	실기시험	조적작업
미장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미장시공
미장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미장시공 4. 미장관계재료
	실기시험	미장작업
미장기능사보	실기시험	미장작업
온돌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 3. 건축제도 4. 온돌 및 구멍탄용 보일러구조 5. 온돌시공
	실기시험	온돌시공작업
온돌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온돌및구멍탄용보일러구조

(2) 檢定의 方法

① 檢定의 基準(시행령 제14조)

- 기능장: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업관리·기능감독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 기능사 1급: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응용·제작·제조·조작·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된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 기능사 2급: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된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 기능사보: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상위등급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그 지휘감독 하에 제반 기능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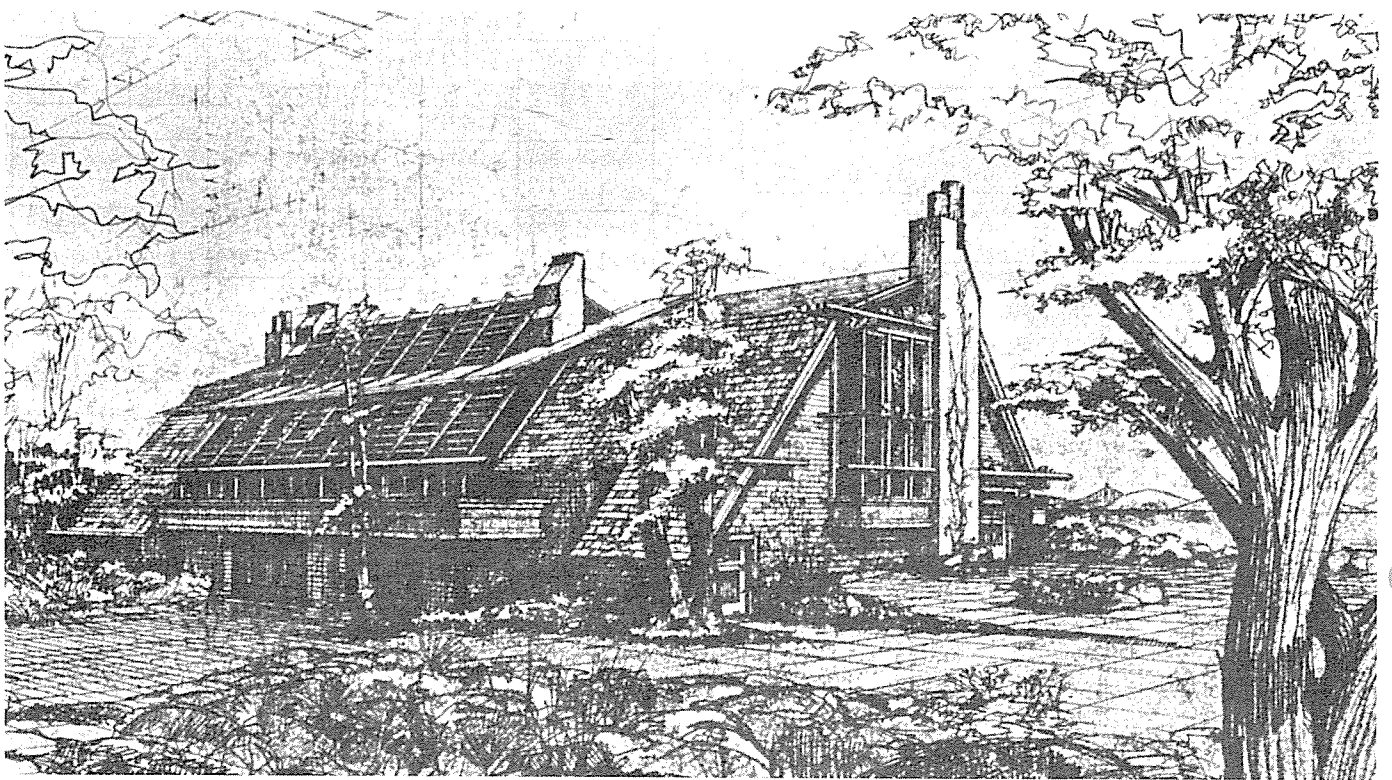
		4. 온돌시공
	실기시험	온돌시공작업
온돌 기능사보	실기시험	구들온돌·구명탄용온수온돌시공 작업중 택일
기와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기와시공
	실기시험	기와잇기 작업
기와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기와시공 4. 지붕구조
	실기시험	기와잇기 작업
기와 기능사보	실기시험	기와잇기 작업
타일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타일시공
	실기시험	타일시공 작업
타일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타일의장 4. 타일시공
	실기시험	타일시공 작업
타일 기능사보	실기시험	타일시공작업
유리시공 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유리시공
	실기시험	유리시공 작업
유리시공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유리시공 4. 안전관리
유리시공 기능사보	실기시험	유리시공 작업
비계 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비계시공
	실기시험	비계작업
비계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비계시공 4. 안전관리
	실기시험	비계작업
비계 기능사보	실기시험	비계작업
거푸집 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거푸집시공
	실기시험	거푸집 작업
거푸집기능 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거푸집시공 4. 목공술
	실기시험	거푸집 작업
거푸집 기능사보	실기시험	거푸집 작업
건축도장 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건축도장시공
	실기시험	도장작업
건축도장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도장의장 4. 도장시공
	실기시험	도장작업
건축도장 기능사보	실기시험	도장작업
가구도장	필기시험	1. 도장재료 2. 도장의장

기능사 1급		3. 도장시공 4. 건축제도 5. 가구도장시공
	실기시험	가구도장작업
가구도장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도장재료 2. 도장의장 3. 도장시공 4. 건축제도
	실기시험	가구도장 작업
가구도장 기능사보	실기시험	가구도장 작업
도배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색 채 4. 건축시공 5. 도배시공
	실기시험	도배작업
도배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도배의장 4. 도배시공
	실기시험	도배작업
도배 기능사보	실기시험	도배작업
목공기능장	필기시험및 면접시험	목구조·창호제작·가구공작·목 공재료·적산·목재가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목공기 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목구조시공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건축목공기 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건축제도 3. 목공술 4. 목구조시공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건축목공기 능사보	실기시험	건축목공작업
가구제작기 능사 1급	필기시험	1. 가구제도 2. 가구의장 3. 가구공작법 4. 가구재료
	실기시험	가구제작
가구제작 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가구제도 2. 가구의장 3. 가구공작법 4. 가구재료
	실기시험	가구제작
가구제작 기능사보	실기시험	가구제작
창호제작 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창호제작
	실기시험	목재창호제작 및 금속재창호 제 장중 택일
창호제작기 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창호의장 3. 건축제도 4. 창호시공
	실기시험	목재창호제작 및 금속재창호 제 작 중 택일
창호제작기 능사보	실기시험	목재창호제작 및 금속재창호 제 작 중 택일
철골·철근 기능장	필기시험및 면접시험	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건 축시공·제도·적산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철근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실기시험	철근조립 공사
철근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철근콘크리트 3. 건축제도 4. 철근시공

	실기시험	건축조립 공사
철근 기능사보	실기시험	철근조립 공사
철골기능사 1급	필기시험	1. 건축구조 2. 건축재료 3. 건축제도 4. 건축시공 5. 철골조시공
	실기시험	철골공사
철골기능사 2급	필기시험	1. 일반구조 2. 철골구조 3. 건축제도 4. 철골조시공
	실기시험	철골공작
철골 기능사보	실기시험	철골공작

註: 종전 합석기능사를 폐지하고 건축재료시험 기능사 및 유리시공 기능사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장에 있어서는 건축제도, 건축시공, 목공 및 철골·철근의 4개 기능장으로 통폐합 하였음.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술사 응시자격의 확대는 딱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기사 검정에 있어 반드시 건축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함과 실기시험의 부과는 건축기술 전문성 제고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며 기능사에 있어서는 각 종목별로 당해 종목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구성하는 등 건축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있어 국가기술자격 인력 수급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내시간이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